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31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48,972,095원을,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3,421,98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16,565,520원(가산세 97,944,19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70,568,240원(가산세 6,843,97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에 [redacted]지점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 [redacted]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1층 내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매수하고, 2013. 1. 4. 취득세 675,188,240원, 농어촌특별세 33,759,410원, 지방교육세 67,518,820원 합계 776,466,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9. 원고의 [redacted]지점을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면적 372.2㎡)로 이전하고, 2013. 4. 8.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41,826,800원, 지방교육세 14,965,360원 합계 89,792,16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전체 면적 3,358.49㎡) 중 3층(면적 912㎡) 및 4층 일부(면적 489.2㎡)는 원고의 본점이, 1층 일부, 2층 전체, 4층 일부 등(총 면적 1,585.09㎡, 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은 다른 업체에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마.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임대부분 역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416,565,520원(무신고 가산세 97,944,19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70,568,240원(무신고 가산세 6,843,97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redacted]지점과 관계없이 취득하였고, 이 사건 임대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7

분 취득으로 인하여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이 유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 대상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redacted]지점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부분이 중과대상인지 여부

가)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전입과 관련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도 포함한다)에 대하여 중하게 과세하는 이유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지점 등을 대도시에 설치하고 그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은 이미 어느 정도 대도시의 인구팽창에 기여하거나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하고(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부동산 전부를 지점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지점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7

과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8. 24. [redacted]지점 설치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 2.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redacted]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은 물론 이 사건 임대부분도 중과대상이 된다[임대부분의 관리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redacted]지점이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중 [redacted]지점이 이전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대상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따른 중과 여부는 2013. 1.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지점 설치 후 취득), [redacted]지점이 이 사건 건물에 이전함에 따라 결정(취득 후 전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산세 부분

원고가 2013. 1. 4.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3. 4. 8. [redacted]지점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였고, 일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세표준 신고를 과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7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끝.